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8 선고 2022가단113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2. 2.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5,425,7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425,781원 및 그 중 3,102,094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6230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10. 22. ‘C는 원고에게 14,578,909원 및 그 중 3,102,094원에 대하여 2021.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2. 16.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E이 있으며, C의 상속지분은 2/7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2. 2. 16.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22.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477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23. 2. 27.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에 관하여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결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미달하는 채무자의 상속분이므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도 이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는 적어도 피고가 2023. 2. 27.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인 630,000,000원으로 추정되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7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최소 117,142,857원{= 410,000,000원(= 630,000,000원 - 220,000,000원) ×

2/7, 소수점 이하는 버림}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5,425,781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15,425,781원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다.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5,425,7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25,781원 및 그 중 원금인 3,102,094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희

별 지 목 록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외 1필지

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4층

공동주택(아파트)

지2층 80.50m²지1층 80.50m²1층 303.27m²2층 286.85m²3층 384.14m²4층 384.14m²5층 384.14m²6층 384.14m²7층 384.14m²8층 384.14m²9층 384.14m²10층 384.14m²11층 384.14m²12층 384.14m²13층 384.14m²14층 384.14m²15층 384.14m²16층 384.14m²17층 384.14m²18층 384.14m²19층 384.14m²20층 384.14m²21층 384.14m²22층 384.14m²23층 384.14m²24층 384.14m²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59.75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76696 분의 32.39

